의 안 번 호	2084	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4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4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5. 19.(금)

2. 제안이유

○ 혁신교육을 중구형 미래교육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 명확화 등 중구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혁신교육을 중구형 미래교육으로 확대 추진에 따른 용어 등 수정
(안 제명, 전체 조항)

- 혁신교육 용어를 미래교육으로 변경
- 혁신교육지구를 지역교육협약인 서로나눔교육지구로 변경

나. 사업의 범위에 유사사업 삭제 및 미래교육 사업 추가(안 제4조)

- 학교 공교육 운영은 학교 고유사무로, 우리 구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, 1호(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) 삭제
- 교육인프라 네트워크는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과 유사하여,

6호(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지원) 삭제

-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지원 추가

다.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(안 제7조, 제8조)

라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- 용어, 문구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5. 검토의견

❍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 명확화 등 중구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

❍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